

개학과 함께 2020. 4.15.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위



선거운동기간(2020년 4월 2일 ~ 4월 14일) 중에 친구에게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자고 권유하거나 OO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자고 하거나, 또는 OO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. 다만,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학교에서 할 수 없는 행위



후보자를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는 행위 X

쉬는 시간,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선거

운동을 하고, 다른 반도 계속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OO



X

교육은〇〇〇후보자에게



OO당을 지지하고 있는 만 18세 학생이 OO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OO당 선거유세 노래를 다운받아서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OO당에게 투표 해달라고 하는 행위 X

동아리 회장

많은 도움 되셨나요?

다음 회차에 안내해 드릴 내용은

금품제공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. 감사합니다.

써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
'OO 동아리' 또는 'OO동아리 대표(회장) OOO'라는 표현을